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11. 18.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1월 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11월 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 행정조직의 능률화와 기능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획실을 설치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발전행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획실 신설(행정 4급)
- 부서명칭변경 조정 → 담당관 및 과
 - 시민봉사실 : 시민과 → 총무국
 - 문화공보실 : 문화공보담당관 → 기획실
 - 감사실 : 감사담당관 → 기획실
 -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실
- 소속부서조정
 - 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 총무국 :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허영훈)

동조례는 우리구 본청의 행정조직을 조직의 능률화와 기능의 합리화를 위하여 구본청 행정조직을 5국 28실·과에서 1실 5국 28과·담당관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자치입법기능 강화의 필요성 및 재정수요 확충을 위한 예산관리 기능의 강화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자치구의 기획조정 기능뿐만 아니라 감사, 문화공보등 참모적 보좌기능의 강화는 발전 행정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번 기획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은 관계법령에도 적합하고 이제까지 부구청장의 소속으로 운영되 오던 3실의 기구설치 일반요건의 미비점과 조직 체계상 통솔범위의 비능률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자치기능의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 예산, 관리, 감사, 문화공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 강화의 필요성과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미루어 볼 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
----------	----

제출년월일 : 1996. 1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 행정조직의 능률화와 기능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획실을 설치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발전행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 기획실 신설(행정 4급)
- 부서 명칭변경 조정 → 담당관 및 과
 - 시민봉사실 : 시민과 → 총무국
 - 문화공보실 : 문화공보담당관 → 기획실
 - 감 사 실 : 감사담당관 → 기획실
 -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실
- 소속부서조정
 - 기 획 실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 총 무 국 :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령) 제10조
- 시정12200-730('96. 9. 3) : 자치구 기획실 신설 관리지침 이첩 시달
- 시정12200-850('96.10.11) : 자치구 행정기구(기획실) 설치승인 및 정원승인서 통보

4. 개 정 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실·국 및 과”를 “실·국 및 담당관·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총무국·재무국·시민생활국·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을 둔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내지 제11조를 제4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3조(기획실) ①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 및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 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감사·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3.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④ 문화공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4. 관광 및 문화제에 관한 사항

제4조(중전의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무국에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여권과를 둔다.

②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2.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3.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호적에 관한 사항
4.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중전의 제11조) 제1항중 “실·과”를 “담당관·과”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 가목중 “시민국”을 “시민생활국”으로 한다.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관련국장”을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소속국장”을 “소속 실·국장”으로 한다.

-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4. 위험물취급분야중 “가스계장”을 “가스안전계장”으로 하고 5. 행정관리분야중 “6급상당(진흥계장)”을 “6급상당(사회진흥계장)”으로 한다.
-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국장 또는 과장급”을 “국장급 또는 과장급”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실,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
-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⑧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담당실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과장, 법제계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제계장”으로 “기획예산과 법제계”를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제계”로 한다.
제8조제4항중 “실, 과”를 “담당관, 과”로 한다.
- 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토지관리계장”을 “지적과장”으로 “토지조사계장”을 “지가조사계장”으로 한다
-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을 “보험노정계장”으로 한다
-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 ⑫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3항중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상공계장”을 “중소기업계장”으로 한다
- ⑬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중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두는 <u>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u>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두는 <u>실·국 및 담당관·과 등 행정기구</u>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실·국의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재무국·시민생활국·도시정비국</u> 및 건설국을 둔다.</p>	<p>제2조(실·국의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기획실·총무국·재무국·시민생활국·도시정비국</u> 및 건설국을 둔다.</p>
<p>제3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2. <u>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u> 3. <u>문화·예술에 관한 사항</u> 4. <u>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u> 	<p>제3조(기획실) ① <u>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 및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u> ② <u>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u> 2. <u>예산의 편성·배정·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u> 3. <u>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u> 4. <u>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u> 5. <u>지방의회에 관한 사항</u> </p>
<p>제4조(감사실) (삭 제)</p> <p>제5조(시민봉사실) (삭 제)</p> <p>제6조(총무국) ① <u>총무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사회진흥과·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여권과를 둔다.</u> ② (생략) ③ <u>기획예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③ <u>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2. <u>감사·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u> 3. <u>환경순찰에 관한 사항</u> ④ <u>문화공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2. <u>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u> 3. <u>문화·예술에 관한 사항</u> 4. <u>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u> </p>
<p>제4조(총무국) ① <u>총무국에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여권과를 둔다.</u> ② (현행 제6조제2항과 같음) ③ <u>시민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제4조(총무국) ① <u>총무국에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여권과를 둔다.</u> ② (현행 제6조제2항과 같음) ③ <u>시민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현행	개정안
<p>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p> <p>2. 예산의 편성·배정·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p> <p>3.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p> <p>4. 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p> <p>5. 지방의회 관한 사항</p> <p>④~⑥ (생략)</p> <p>제7조~제10조 (생략)</p> <p>제11조(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p> <p>②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p>	<p>1. 문서·관인·민원담당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p> <p>2.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p> <p>3.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호적에 관한 사항</p> <p>4.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④~⑥(현행 제6조제④~⑥항과 같음)</p> <p>제5조~제8조(현행 제7조 내지 제10조와 같음)</p> <p>제9조(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① 담당관·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p> <p>②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p>
부칙	부칙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운영위원회</p> <p>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p> <p>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p> <p>2. 행정재무위원회</p> <p>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속하는 사항</p> <p>나.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다.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3.~4. (생략)</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p> <p>제5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1.</p> <p>가.</p> <p>나.</p> <p>다.</p> <p>.....</p> <p>2.</p> <p>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p> <p>다.</p> <p>3.~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 ① (생략)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1. 의회의원중 1인	1.																																						
2. 구청 <u>관련국장</u> 1인	2. .. <u>관련 실·국장</u> ..																																						
3. 의무직 공무원 1인	3.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4.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9조(간사) ① (생략)	제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간사는 <u>감사실장</u> 이 되고 시기는 <u>감사실 조사계장</u> 이 된다.	② <u>감사담당관</u> <u>감사담당관</u>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영등포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민원발생 관할 동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u>소속 실·국장</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 구청장의 공인은 <u>시민봉사실</u> 에, 기타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수한다.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 <u>시민과에</u> ,.....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별표 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별표 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4. 위험물취급분야	4. 위험물취급분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직명(위)및 업무구분</th> <th>직 급</th> <th>직무 내용</th> <th>임용 자격</th> <th>근거</th> </tr> </thead> <tbody> <tr> <td>가스계장</td> <td>6급상당</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r> <tr> <td rowspan="2">고압가스 관리기사</td> <td>7급상당</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r> <tr> <td>8급상당</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r> </tbody> </table>	직명(위)및 업무구분	직 급	직무 내용	임용 자격	근거	가스계장	6급상당	(생략)	(생략)		고압가스 관리기사	7급상당	(생략)	(생략)		8급상당	(생략)	(생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직명(위)및 업무구분</th> <th>직 급</th> <th>직무 내용</th> <th>임용 자격</th> <th>근거</th> </tr> </thead> <tbody> <tr> <td>가스안전계장</td> <td>6급상당</td> <td>(현행과같음)</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고압가스 관리기사</td> <td>7급상당</td> <td>(현행과같음)</td> <td></td> <td></td> </tr> <tr> <td>8급상당</td> <td>(현행과같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명(위)및 업무구분	직 급	직무 내용	임용 자격	근거	가스안전계장	6급상당	(현행과같음)			고압가스 관리기사	7급상당	(현행과같음)			8급상당	(현행과같음)		
직명(위)및 업무구분	직 급	직무 내용	임용 자격	근거																																			
가스계장	6급상당	(생략)	(생략)																																				
고압가스 관리기사	7급상당	(생략)	(생략)																																				
	8급상당	(생략)	(생략)																																				
직명(위)및 업무구분	직 급	직무 내용	임용 자격	근거																																			
가스안전계장	6급상당	(현행과같음)																																					
고압가스 관리기사	7급상당	(현행과같음)																																					
	8급상당	(현행과같음)																																					

현					개				
행					정				
안					안				
5. 행정관리분야					5. 행정관리분야				
직명(위)및 업무구분	직 급	직무 내용	임용 자격	근거	직명(위)및 업무구분	직 급	직무 내용	임용 자격	근거
지 도 사	6급상당 (진흥계장)	(생략)	(생략)		지 도 사	6급상당 (사회진흥계장)	(현행과같음)		
	7급상당	(생략)	(생략)			7급상당	(현행과같음)		
공과금요원	9급상당	(생략)	(생략)		공과금요원	9급상당	(현행과같음)		
	8급상당	(생략)	(생략)			8급상당	(현행과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u>국장급 또는 과장급</u>				
③~⑤ (생략)					③~⑤ (생략)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실·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만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u>담당관·과장</u>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실·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u>담당관·과장</u>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발명보상조례				
제25조(간사) ① (생략)					제25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u>기획예산과장</u> 이 된다.					② <u>기획예산담당관</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제4조(운영) ① 상담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u>기획예산과장</u> 책임하에 운영한다.					제4조(운영) ① <u>기획예산담당관</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상담처리) ①~③ (생략)					제8조(상담처리) ①~③ (현행과같음)				
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은 관련 실·과에 통지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④ <u>담당관·과에</u>				

현행	개정안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u>토지관리과</u>장으로, 서기는 <u>토지조사계장</u>으로 한다. ② (생략)</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u>지적과</u>장<u>지가조사계장</u>..... ②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 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u>보험연금계장</u>으로 한다. ② (생략)</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u>보험노동계장</u> ②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은 <u>산업과</u>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연료계장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역경제과</u>장.....</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국장, <u>시민국장</u>, 구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u>산업과</u>장이 서기는 <u>상공계장</u>이 된다. ④ (생략)</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민생활국장</u>, ③ <u>지역경제과</u>장 <u>중소기업계장</u>..... ④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시민국장</u>이 된다. ③ (생략)</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민생활국장</u>.....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실무위원회) ①~② (생략) ③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9조(실무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민생활국장</u>.....</p>
<p>제10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u>산업과</u>장이 된다. ③ (생략)</p>	<p>제1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역경제과</u>장..... ③ (현행과 같음)</p>